「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소득사업」공고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64조 및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8조, 제9조, 제17조에 따라2 제4항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. .

익산시장

1. 지원대상 및 규모

가. 사 업 명 :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소득사업

나.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
다. 사 업 비 :신청자별 총사업비 1억원 미만(내역사업 2개 이상 가능)

라. 사업내용 : 5개 사업

사 업 명	지 원 내 용	지원비율
친 환 경 임산물재배관리	토양개량제(소석회, 석회고토, 부산석회, 규산질,목 탄, 목초액)	국70 도9 시21
	유기질비료(혼합유박, 유기복합비료, 가축분퇴비, 퇴비 등)	정액지원 (등급별 1,600 ~2,000원/20kg)
산림작물생산단지	산림버섯 자목·톱밥배지 구입, 관수·관정시설, 냉해 예방시설, 감시시설 등	국20 도9 시20 융30 자20
임 산 물 생 산 기 반 조 성	선별기, 예취기, 기계화전지기, 수집기, 잔디깎기, 임 산물 수확기, 등 임산물 재배·생산 관련 기계·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,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(보완)	국20 도9 시20 융30 자20
임 산 물 유통기반조성	유통장비 및 기자재(파렛트, 운반용 상자 등), 저 장·건조시설, 가공·선별·포장·장비(박피기, 건조기, 절단기, 분쇄기, 세절기 등)	국20 도9 시20 융30 자20
임 산 물 상품화 지원	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, 포장디자인개선 사업, 내·외부 포장재 지원	국20 도9 시20 융30 자20

- 기타 지원내용은 「농림축산식품부 산림소득사업 시행지침서」참고.
- ※ 융자의 경우 대출신청기관에서 개인신용에 따라 융자가 불가할 수 있으며, 융자 불가 시 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함.

마. 지원자격 및 요건
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제1항 [별표2] "임 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"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또는 생산자단체
- O 선별·가공·유통·상품화를 하거나,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

ī	구 분	지 원 자 격
	임업인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에 의한 임업인
임업인 등	임업후계자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
* 개인에 한함	독림가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에 의한 독림가
	신지식농업인 (임업분야)	「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생	산자단체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

O 지원요건

-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만 신청 가능하며,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
- * 산림소득분야 협·단체, 임업진흥원, 산림조합, 산림교육원, 대학교 등 산림·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(고등학교·대학교 산림·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·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,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)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
- *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%만 인정되며,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(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 수 조건이며,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)
-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[단, 임업인 등(생산자단체 제외)이 '등기 비대상 시설물'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],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

O 우선지원:

-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
- 농업재해보험(농작물 및 농업인)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(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주능로 판단)
- 저온, 가뭄·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: 표고재배사 냉·난방시설, 관수·관정시설, 비가림시설, 냉해예방시설(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), 지주대, 지지대, 받침대 등

- (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)자조금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,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워
- 「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」에 따른 우선지원

바. 제외대상자(지원제한기간 : 5년 이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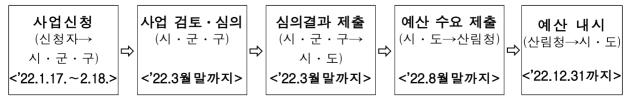
- 「보조금법」제31조의2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 조, 제78조 준용
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
 -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 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 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
 -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, 사업변경,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(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)

사. 참고 · 주의사항

- O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,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.
- O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·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될 수 있음.

2. 지원절차

- 가. 2023년 보조사업자 사업 신청 : 2022. 1. 17. ~ 2022. 2. 18.
 - 대상자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: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산림분과



나. 2023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진행 : 2023. 1. ~ 12.

3. 지원신청서 접수

가. 접수기가 : 2022. 1. 17.(월) ~ 2022. 2. 18.(금)

나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

다. 접 수 처

O 산 림 과 : 익산시청 북부청사 3층(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)

○ 읍·면·동: 사업소재지가 위치한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라. 제출서류 :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, 증빙자료

O (공통)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, 농업경영체 확인서, 사업비 견적서

O (증빙서류 택 1)

	·
임업인 등	증빙서류
3ha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	경영계획인가서. 토지소유권 등
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	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, 월급명세서, 고용보험가입증명서(직접임업경영 해당 없음)
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 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	임산물 거래한 세금계산서, 납품확인증, 이체확인증 등
「산림조합법」제18조에 따른 조 합원으로써 임업을 경영하는 자	조합원 가입증서, 산림경영계획 인가서

O (추가서류) 임대차계약서, 사업성 검토서·대출신청자료(3천만원 이상), 산 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(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)

4. 사후관리

- 가.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「보조금법」제35조의2(중요재산의 부기등기)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」제60조(중요재산의 등록 등)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.
 - *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
- 나.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60조제1항 [별표4]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.
 - * 비닐하우스골조 10±3년. 관정·관수·배수시설 5±2년 등
- 다. 특히,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.

5. 기타사항

- 가.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나.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, 제출서류 보완 요청에도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
- 다.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며.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.
- 라.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.
- 마.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시스템인 e-나라도움(https://intra.gosims.go.kr/) 을 이용하여 교부신청 및 정산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임.
- 바.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(☎ 859 588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1부.
 - 2. 사업성 검토서 1부.
 - 2. 대출신청자료 1부. 끝.

[참고]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

<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>

종 류	품 목 명	
수실류(14개)	밤, 감(떫은감), 잣, 호두, 대추, 은행, 도토리, 개암, 머루, 다래, 복분자딸기, 산딸기, 석류, 돌배	
버섯류(8개)	표고, 송이, 목이, 석이, 능이, 싸리, 꽃송이버섯, 복령	
산나물류(12개)	더덕, 고사리, 도라지, 취나물, 참나물, 두릅, 원추리, 산마늘, 고려엉겅퀴(곤드레), 고비, 어수리, 눈개승마(삼나물)	
약초류(18개)	삼지구엽초, 삽주, 참쑥, 시호, 작약, 천마, 산양삼, 결명자, 구절초, 약모밀, 당귀, 천궁, 하수오, 감초, 독활, 잔대, 백운풀, 마	
약용류(20개)	오미자, 오갈피나무, 산수유나무, 구기자나무, 두충나무, 헛개나무, 음나무, 참죽나무, 산초나무, 초피나무, 옻나무, 골담초, 산겨릅나무, 산사나무, 느릅나무, 황칠나무, 꾸지뽕나무, 마가목, 화살나무, 목단	
수목부산물류(1개)	수액(樹液), 나뭇잎, 나뭇가지, 나무껍질, 나무뿌리, 나무순 등 나무(대 나무류를 포함한다)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	
관상산림식물류(6개)	야생화, 자생란, 조경수, 분재, 잔디, 이끼류	
그 밖의 임산물	위 품목 외에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(목재제품을 포함한다)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	

※ '그 밖의 임산물'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

-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(수실류, 버섯류, 산나물류 등)의 지원기 준·지원내용 등을 준용
-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(양다래, 백수오, 오디, 차나무 등)